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4년 6월 16일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16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1994. 3. 16 법률 제4741호)으로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 읍면동장에 준하는 증평출장소 지소장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증평출장소의 지소장을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직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읍면동장에 준하는 증평출장소 지소장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조례에 있어서 지소장에 대하여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던것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종의 폭을 확대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6. 칙 부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